

—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승인(안)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3월 30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3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4월 3일

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에 도시계획세 부과 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(단위 : km²)

지역별	도시계획구역	도시계획세 부과지역				비고
		계	고시	기 고시 (의회승인)	미고시	
계	168,218	168,218	131,772	7,467	28,979	
동지역	127,452	127,452	127,452			
읍면지역	40,766	40,766				
-선산읍	6,435	6,435	4,320	1,588	0,527	
-고아읍	30,626	30,626		5,879	24,747	
-산동면	3,705	3,705			3,705	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제238조2항(지방의회의결)
- 구미시세조례 제84조(부과지역 고시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도시계획세 부과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음.
- '91년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는 부과지역을 도지사의 승인으로 고시하여 왔으며 '89년 6월에 지방세법 제238조2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.
-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관련 법규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 지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지역을 고시한 자료를 근거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왔음.
- 최근 부과지역 고시에 대한 관련사항 및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납세 저항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법이나 조례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